

저작인접권에 주목한다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이 호 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보관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나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함으로써 저작물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저작권은 정보를 기록, 저장, 전달하는 기술의 발달과 맥락을 함께하면서 발전하였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작물을 직접 필사하는 것이었다. 저작물을 직접 필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를 별도의 권리로 규율할 필요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인쇄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대량 복제가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저작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은 태동하였으며 이후 녹음기술, 녹화기술, 사진기술, 방송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저작권도 이러한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진화를 거듭하여 왔다.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저작권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구석구석을 규율하는 생활법률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거나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상당한 논란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시점에서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작인접권 중에서도 실연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그 권리의 주체와 내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저작인접권의 개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독자나 관객 혹은 청중이 감상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사람의 노고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들어낸 창작자(작가, 작곡가, 작사가 등등)의 노고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음악, 연극, 무용 작품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작품을 공연으로 만드는 노고가 필요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품을 책, 음반, 영상, 방송으로 만드는 노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술 창작 활동과 그 대중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노고를 필요로 한다. 바로 저작권법은 예술 창조와 보급에 기여한 여러 사람들의 노고

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권리를 규율하고 있다.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통칭한 개념을 저작권이라 한다. 한편 이들의 권리와는 별개로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 창조에 기여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권접권 또는 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이라 한다. 저작권접권이란 용어는 저작권과 인접(이웃)하는 권리라는 의미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장하되 저작권과는 권리의 보장 범위가 약간 상이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이지만, 저작권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서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저작권접권자가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의 창조나 그 확산에 기여한 노고를 인정하지만, 이들은 원천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그 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권리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접권을 별도의 권리로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정보를 기록, 저장, 전달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었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출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실연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녹음, 녹화, 방송과 같은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굳이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음반을 이용해서, 방송을 이용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실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녹음이나 방송 등으로 저작물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발생하면서 이들의 권리를 저작권접권으로 새롭게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MP3 파일의 공유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저작권접권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저작권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원하는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저작권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접권이란 용어는 저작권과 인접(이웃)하는 권리라는 의미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장하되 저작권과는 권리의 보장 범위가 약간 상이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이지만, 저작권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서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부여되는 권리임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각각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다(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글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실연의 개념과 권리의 주체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실연(實演)'은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연출 그 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희곡을 바탕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 안무에 기초해서 춤을 추는 무용수, 악보에 따라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 성악가, 가수, 연설문이나 문학작품을 말로써 표현하는 구술자(낭독자) 등이 저작인접권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해서 저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무대 또는 그 밖의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 또한 저작물이 아닌 것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에 옮기는 것도 실연의 범위에 포함된다. 서커스나 미술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연의 개념에는 앞서 언급한 실연을 지휘하거나 감독, 연출하는 것도 모두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연출가, 지휘자, 감독 등에게도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주어진다.

실연자의 권리

저작권은 여러 가지 분화된 권리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 일컫기도 하는데, 저작인접권도 이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의 세분된 권리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 그 자체를 녹음·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실연 그 자체를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유형물에 고정

된 실연을 이용해서 또 다른 고정물로 다시 제작하는 행위와 방송을 수신해서 고정물을 다시 만드는 행위도 모두 복제권의 규율대상이 된다. 여기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실연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오직 실연자 뿐이며, 적법하게 실연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실연자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제작자에게 이러한 실연자의 권리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통이기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의 항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의 의욕을 고취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저작인접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한받는다.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MP3 파일의 공유나 스트리밍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저작권집권이 새로운 주목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둘째,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전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하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연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네트워크에 실연을 업로드해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송권은 인터넷을 이용한 MP3 파일이나 스트리밍서비스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에 새롭게 부여된 권리이다. 이 경우도 복제권과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실연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실연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셋째,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방송'이라 함은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은 여러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수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쌍방향 개념의 전송과는 구별된다. 실연의 방송은 다시 실연 그 자체의 생방송과 그 재방송, 그리고 실연의 고정물에 의한 녹음, 녹화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연자의 방송권이 미치는 범위는 실연 그 자체의 생방송과 그 실연 자체를 수신하여 이루어지는 재방송, 그리고 실연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녹음, 녹화된 고정물을 이용한 방송 등으로 국한

된다. 다시 말하면 실연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이루어진 녹음물로 이루어진 방송에 대해서는 실연자의 방송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에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진 녹음물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것은 실연자의 별도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송이 판매용 음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후술하는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실연자는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 경우에 실연자는 방송 사용에 대한 허락을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판매용 음반은 대개의 경우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한 음반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경우 실연자는 실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 있다. 때문에 이 경우에 방송사업자는 실연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실연을 방송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복제권, 전송권, 실연방송권은 실연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배타적인 권리인 반면에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

저작권 인터넷 홍보만화
문화관광부



실연자의 저작권접권은 실연 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접권도 저작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 발생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권리는 실연행위가 이루어진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 동안 존속한다. 따라서 2006년 3월 2일에 실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접권은 205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한 권리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보다 제한적인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 사업자가 개별 저작권접권자와 모두 접촉하여 보상금을 협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저작권접권단체와 보상금을 협의하고, 이들 단체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실연자의 저작권접권에 관한 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해당 실연은 판매용 음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여 행위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비판매용 음반의 대여나, 비영리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대여 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대여권도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실연자 단체를 통하여 집중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한국예술실연자단체 연합회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접권의 발생과 소멸, 권리의 행사

실연자의 저작권접권은 실연 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접권도 저작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 발생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권리는 실연행위가 이루어진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 동안 존속한다. 따라서 2006년 3월 2일에 실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접권은 205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다만,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과 보호내용이 조금씩 상이하였고, 그에 대해서 각각 부칙으로 구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그 보호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

저작권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접물은 사회 공유의 재산이 되어 누구라도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저작자의 사후 50년 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서 저작권접권은 권리 발생 후 50년 동안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저작권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행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저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문화기본법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저작권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공연예술과 관련된 예술 행위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구가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드높인 저작권집권자로서, 저작물의 사용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행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인접권도 물품과 같은 거래의 대상이 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의 대상이 된다. 권리행사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용허락이며 이용허락에 따른 반대급부로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보상금청구권을 통하여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사용에서 발생한 보상금을 저작권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당수의 실연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 합주

또는 연기를 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게 된다. 만일 대표자의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지휘자나 연출자, 감독 등에게 실연자로서 저작권접권이 주어진다. 이 때 지휘자나 연출자라 함은 실연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지휘하여 완성한 자를 의미한다. 실연자 개인 모두에게 저작권접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되면 저작권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실연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작권접물의 보다 원활하고 활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배려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접권의 제한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의 의욕을 고취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독점적인 권리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여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꾀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원리는 저작권접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저작권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등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한받는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적인 목적의 공연과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와 전송,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녹음,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접권이 제한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저작권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 없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문화기본법이다. 저작권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를 드높인다.

「그린벤치」



닫는 말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문화기본법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저작권은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공연예술과 관련된 예술 행위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을 구가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저작물의 창작자로서, 저작물의 창작적 가치를 드높인 저작인접권자로서, 저작물의 사용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하게 행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합당하게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

참 고 문 헌

-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박문석 저, 지식산업사, 1997)
- 『(제3판)저작권법』 (오승종 · 이해완 공저, 박영사, 2004)
- 『(제3판) 저작권법개설』 (이상정 · 송영식 공저, 세창출판사, 2003)
- 『(개정판) 저작권법원론』 (장인숙 저, 보진재, 1996)